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근로자에 대한
원천적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
■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73호)

2022.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요지	3
2.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2021년 9월 15일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근로자에 대한 원천적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공익사업에 대한 긴급조정 방식과 같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삭제 등).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54조(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	제54조(조정기간) ① ----- ----- ----- ----- <u>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u>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日,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日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위산업체에-----.

② -----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조정의 결정을-----

-----.

1.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2. 쟁의행위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것으로서 방산물자의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u>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① ----- -----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경우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한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u><삭 제></u>
--	---

2. 검토의견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¹⁾, 이에 따라 법률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쟁의행의 금지 근로자를 총포류·유도무기 등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한 원천적인 단체행동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익사업과 같이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임.

1)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② (생략)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기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⑤ (생략)

즉,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고,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현행 공익사업에 대한 사후통제와 같이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은 방식은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② 현행 공익사업의 대상 역시 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안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³⁾, ③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엄법」 상 계엄선포를 통해서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가 가능하다는 점⁴⁾에서,

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행과 같은 단체행동의 전면금지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② (생략)

4)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다만, 현행 법률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쟁의행의 금지 근로자를 총포류·유도무기 등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법원도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현행법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쟁의행의 금지 근로자의 실제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음⁵⁾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은 사후적 조정 수단에 불과하여 사실상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국방부**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방위산업체의 생산 차질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방위사업청**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근로자에 대한 원천적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적정방법 및 국가안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됨.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문 의 처

02)6788-5538
